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91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 강승규·고동진·구자근

박상웅 • 이인선 • 김은혜

조은희 • 박준태 • 박정하

인요한 · 신동욱 · 김기현

의원(12인)

제안이유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라함)를 통해 대규모 발전사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하고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열악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에서도 보급확산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보급환경의 변동에 따라 제도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등으로 RPS를 통한 보급방식은 한계에 다다르는 등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해가고 있음.

특히, 기존 공급의무자들은 자체 투자보다는 공급인증서를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외부 조달 방식을 활용해 의무 이행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RE100 기업과의 수요 경합, 공급인증서 수급 불균형 등에 따른현물시장 REC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전기 소비

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반면, 외국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점차 성숙됨에 따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입찰제도 운영 국가가 대부분인 상황임.

물론, 우리나라도 2017년도부터 RPS 내 경쟁 입찰을 주요 이행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내 산업 육성 및 효율적인 보급을 견인해 왔고, 20 24년 2월 제정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의자원안보를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단일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인 입찰제도로의 이행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정부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원화하여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공급의무자는 직접 투자에 집중하여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보급목표 및 RE100 등 민간 수요와 연계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을 경쟁입찰로 일원화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에너지원별 입찰 물량을 설정,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는 구매의무로 전환하며, 구매의무자를 지정하여 정부가 낙찰 물량에 대해 전량 구매토록 하면서 구매에 드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하고자 함(안 제

12조의13 신설).

- 나.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하여 보급의무를 부여하고 입찰제도를 통해 이행토록 함(안 제12조의14 신설).
- 다. 보급의무자는 보급의무량 초과 시 이월할 수 있으며 미달 시에는 부족량에 대해 일부를 유예하거나 보급대체이행 금액을 납부하는 이행 수단을 마련하고 보급대체이행 금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함(안 제12조의15 신설).
- 라. 보급의무자가 보급의무 미이행 시 의무 미이행량에 비례하여 과징 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토록 예외 조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16 신설).
- 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 정부중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의 안정적 전환 및 입찰제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을 입찰관리기관으로 지정하 고 발전정보 인증서를 관리·발급할 수 있는 입찰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17 신설).
- 바. 입찰관리기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인증할 수 있는 발전 정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안 제12조의18 신설).

법률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운영
- 17.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지원

제12조의5제5항 중 "구매하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우에 한하여"로 한다.

제12조의13부터 제12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13(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입찰제도(이하 "입찰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찰제도를 통해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1.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현황 및 전망

- 3. 자원안보(「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원안보 를 말한다. 이하 같다)
- 4. 그 밖에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입찰제도를 운영할 때 제12조의14에 따른 보급의 무자의 의무이행을 촉진하고, 산업·수출 경쟁력 및 안보강화를 위 해 별도 입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구매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의무자"라 한다)에게 입찰제도에서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의무자가 구매의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정보 등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입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보급의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

- 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보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 너지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량"이라 한 다)을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보급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 1.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 2. 입찰제도 공고 용량
- 3.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 4. 자원안보 현황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보급의무의 보급대체이행)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급의무자가 보급의무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이월하게 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량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 을 납부하여 그 부족량에 대하여 보급대체이행 또는 면제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 금액을 납부하거나 보급대체이행이 면제된 보급의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족량만큼 보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량의 이월 및 유예할 수 있는 범위와 보급의무자의 보급대체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보급대체이행 금액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 제12조의16(재생에너지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제12조의14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15에 따른 보급대체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

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를 감경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 제12조의17(재생에너지 입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입찰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재생에너지 입찰기관 (이하 "입찰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 2. 제12조의13에 따른 입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 ② 입찰관리기관은 제12조의13에 따른 입찰제도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입찰제도 운영 및 제12조의18에 따른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이하 "입찰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찰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찰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찰관리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찰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인증하는 인증서(이하"발전정보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 ②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입찰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입찰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재생에너지원· 발전량 및 발전기간 등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확인·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제1항제18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제12조의13에 따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운영
 - 19. 제12조의13제5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정보 등에 관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20. 제12조의14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운영
 - 21. 제12조의15에 따른 보급대체이행 운영ㆍ관리
 - 22. 제12조의17에 따른 입찰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 · 관리

- 23. 제12조의18에 따른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 제33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입찰관리기관 의 임직원
 - 3의3.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위원
- 제3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12조의14제3항에 따른 보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3부터 제12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및 제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유효기간) 제12조의7은 2026년 1 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 ②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 발전사업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적용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공급 인증서 중 의무공급량을 초과하여 공급의무자가 구매한 공급인증서 의 경우 제12조의14에 따른 보급의무량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종류와 이행 실적 인정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운영 <신 설> 17.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지원 16. (생략) 18. (현행 제16호와 같음)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 ① ~ ④ (생 략) 의무화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충당할 수 있다. 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우 에 하하여----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13(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입 찰제도(이하 "입찰제도"라 한 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찰 제도를 통해 도입할 재생에너 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 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1.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 른 전력수급기본계획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현황 및전망
- 3. 자원안보(「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원안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4. 그 밖에 재생에너지 보급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입찰제도를 운영할 때 제12조의14에 따른 보급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촉진 하고, 산업·수출 경쟁력 및 안 보강화를 위해 별도 입찰제도 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

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 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구매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의무자"라 한다)에게 입찰제도에서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의무자가 구매의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정보 등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입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한다.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보급의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

<신 설>

에너지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보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를 의무 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보급의무자가 의무 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는 재생 에너지 보급의무량(이하 "보급 의무량"이라 한다)을 매 5년마 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보급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 1.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 2. 입찰제도 공고 용량
- 3.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 4. 자원안보 현황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보급의무의 이행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급의 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 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5(재생에너지 보급의무의 보급대체이행)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보급의무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 분의 일부를 이월하게 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량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 그 부족량에 대하여 보급대체이행 또는 면제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 금액을 납부하거나 보급대체이 행이 면제된 보급의무자에 대 하여는 해당 부족량만큼 보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량의 이월 및 유예할 수 있는 범위 와 보급의무자의 보급대체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보급대체이행 금액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제12조의16(재생에너지 보급의무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제12조의14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제12조의15에 따른 보급대체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 액은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

 과 및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되, 제1항에 따른 과징

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 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제1항에 따른 과징금를 감경할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 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제12조의17(재생에너지 입찰관리 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입찰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재 생에너지 입찰기관(이하 "입찰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 지센터

- 2. 제12조의13에 따른 입찰제도
 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맞는 자
- ② 입찰관리기관은 제12조의13 에 따른 입찰제도 운영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 행하며, 입찰제도 운영 및 제12 조의18에 따른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이하 "입찰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찰규칙을 변경 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찰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 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수

- 3.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찰관리기관의 지정 기준 ·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입찰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ㆍ 인증하는 인증서(이하 "발전정 보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 ②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 려는 자는 입찰관리기관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입찰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재생에너지원・발전량 및 발전기간 등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① 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하게 할 수 있다.
1. ~ 17.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른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확인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
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한다.
]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① -
1. ~ 17. (현행과 같음)
18. 제12조의13에 따른 재생에
너지 입찰제도 운영
19. 제12조의13제5항에 따른 발
전사업자 정보 등에 관한 관
리시스템 구축・운영
20. 제12조의14에 따른 재생에
너지 보급의무 운영
21. 제12조의15에 따른 보급대
체이행 운영・관리
22. 제12조의17에 따른 입찰관
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
<u>관리</u>
23. 제12조의18에 따른 발전정

18. (생략)

② · ③ (생 략)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 략) <u><신 설></u>

<신 설>

4. ~ 6. (생략)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보인증서의 발급
<u>24.</u> (현행 제18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u>.</u>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입찰관
리기관의 임직원
3의3.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위원회 위원
4. ~ 6. (현행과 같음)
제35조(과태료) ①
 1 9 (청체코 가 O)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2조의14제3항에 따른
보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

	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